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820

발의연월일: 2021. 3. 16.

발 의 자: 한준호·강민정·김홍걸

홍성국 · 오영환 · 임오경

이정문 • 기동민 • 이용빈

정필모 • 서동용 • 김원이

홍익표 • 박홍근 • 송재호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항·항만에 방사선·방사능 감 시기(이하 "감시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, 감시기 의 설치에 대하여는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가 이에 협조하 도록, 감시기의 운영에 대하여는 이를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 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(이하 "유의물질"이라 한다)이 감시 기에서 검출된 때 2차 검색을 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 는 점, 유의물질 발견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행하는 조사·분석을 거부·회피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한 제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감시기를 설치·운영할 때 유의물질 검출 및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,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행하는 방사능 농도 및 종류 등에 대한 조사·분석을 거부·회피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유의물질 검출 및 분석 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(안 제19조제1항 후단 및 제31조제3항제8호의2 신설등).

법률 제 호

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감시기 설치"를 "감시기 설치 및 검색부지 확보"로 한다.

이 경우 감시기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(이하 "유의물질"이라 한다) 검출 및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(이하 "검색부지"라 한다)를 확보할 수 있다.

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감시기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(이하 "유의물질"이라 한다)이"를 "유의물질이"로 한다.

제31조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의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·분석을 거부·회 피하거나 방해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공항・항만에의 감시기	제19조(공항・항만에의 감시기
설치 등) ① 원자력안전위원회	설치 등) ①
는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	
해당하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	
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	
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항	
· 항만에 방사선 · 방사능 감시	
기(이하 "감시기"라 한다)를 설	
치·운영하여야 한다. <u><후단</u>	
<u>신설></u>	시기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
	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
	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
	되는 물질(이하 "유의물질"이라
	한다) 검출 및 분석을 위하여
	필요한 부지(이하 "검색부지"라
	한다)를 확보할 수 있다.
② 「항공사업법」 제2조제35	2
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(이	
하 "항공교통사업자"라 한다)	
및 「항만법」 제2조제5호에	
따른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자	
(이하 "항만시설운영자"라 한	
다)는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	

전위원회의 <u>감시기 설치</u>에 협 조하여야 한다.

- ③ ④ (생 략)
- 제21조(유의물질의 검출 및 분석) 저
 - ① 감시기 운영자는 감시기에 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 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 는 물질(이하 "유의물질"이라 한다)이 검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1조에 따라 신고된 원료물 질,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 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되거나, 「원자력안전법」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 절차를 거친 핵물 질 ·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유의 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.
 - 1. ~ 6. (생략)
 - ② ③ (생 략)

제31조(과태료) ①・② (생 략)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

		<u>삼시</u>	/ _	설지	묏	- 검스	<u> </u>
<u>부지</u>	확보						
3 • (4 (ই	현행기	라 길	날음)			
제21조	(유의	물질	의	검출	및	분석)
1					<u>유</u>	기물 (킬
<u>0</u>]							_
							_
							_
							_
							_
							_
							_
							_
							_
							_

- 1. ~ 6. (현행과 같음)
-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31조(과태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3	 	 	 	 	

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~ 8. (생 략)

<u><신 설></u>

9. • 10. (생략)

④·⑤ (생 략)

-----.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 8의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

 제2항에 따른 조사·분석을

<u>거부·회피하거나 방해한 자</u>

9. • 10. (현행과 같음)

④·⑤ (현행과 같음)